

# 섬유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연구소는 섬유패션디자인과 대한민국 섬유패션디자인과 그와 연계한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본교)부설 섬유패션디자인연구소(이하연구소)라 칭한다.

**제3조(사업)**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섬유, 패션디자인 산업 제영역의 전문적 학술연구
2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
3. 목화 및 섬유패션디자인제품 개발 및 연계 문화산업 발굴
4. 섬유패션관련 기업과 산학협동으로 섬유제품디자인개발
5. 연구지 발간 및 학술회의, 연구발표회 개최
6.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수탁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 제2장 조직

**제4조(임원)**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자문위원
2. 소장1인
3. 간사 1인
4. 분과장 3인
5. 연구위원 약간인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5조(분과구성 및 운영)** ① 연구소의 목적달성과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설치한다.

1. 학술분과/ 섬유패션 관련 학술발표 및 작품발표 업무를 수행한다.
2. 디자인제품 개발분과/ 섬유패션 관련 문화유산 및 지역 고유의 유·무형문화재, 특산물 등을 연구하여 제품화하고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3. 마케팅분과/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 및 신제품의 마케팅 전략과 섬유패션디자인상품의 시장 조사 등을 연구한다.

②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여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④ 소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위원)** 소장은 교내·외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위원을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(구성)**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임원과 약간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(매 학년초)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
③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가.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**제8조(기능)**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 소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
1. 예산과 결산 심의
2. 운영계획 수립
3. 연구업무의 관리
4. 조교 및 연구보조원 임명
5. 분과의 업무 조정
6. 연구소 규정 개정
7. 기타 중요사항

## 제4장 재정

**제9조(재정)** 본 연구소의 경비는 교내지원금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10조(회계년도)**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준하여 적용한다.

**제11조(사업승인 및 보고)** 연구소의 사업승인 및 보고는 예원예술대학교의 <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른다.

**제12조(재산의 귀속)** 본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부 칙(2014. 3. 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